

2009. 4. 24. 의결, 2009. 7. 1. 시행

5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

횡령·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(형법 제355조 제1항), 배임(형법 제355조 제2항), 업무상 횡령·배임(형법 제356조),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·배임(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- 10월	4월 - 1년4월	10월 - 2년6월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6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5년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1년6월 - 3년	2년 - 5년	3년 - 6년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2년6월 - 5년	4년 - 7년	5년 - 8년
5	300억 원 이상	4년 - 7년	5년 - 8년	7년 - 11년

구분		감경요소	기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 행 가담 ●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●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●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●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량 피해자(근로자, 주주, 채권자 등을 포함)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●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● 처벌불월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누범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본적 생계·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●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● 소극 가담 ● 업무상 횡령·배임이 아닌 경우 ●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·수수한 경우 ●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● 횡령 범행인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

[유형의 정의]

01 | 제1유형

- 횡령 · 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-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02 | 제2유형

- 횡령 · 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03 | 제3유형

- 횡령 ·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04 | 제4유형

- 횡령 ·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05 | 제5유형

- 횡령 · 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.

[양형인자의 정의]

01 |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

- 손해액의 약 1/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.

02 |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

-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(예, 채권자)가 별도로 있는 경우
 -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

03 |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

-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,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
 -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
 - 회사 인수 · 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4 |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,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
 -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
 -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

-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5 |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
 -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
 -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
 -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
 -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, 근로자,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(예컨대,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)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6 |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

-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07 |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금융, 증권, 무역,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 - 장부조작, 분식회계,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 -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 -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

-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8 | 내부비리 고발

-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.

09 |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

- 손해액의 약 2/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01 |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02 |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[공통원칙]

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¹⁰⁾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10) 2011. 4. 15. 수정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.

03 | 동종경합범 처리방법

-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횡령·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,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.
 - ② 다만,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3을 감경하고,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 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2을 감경하되,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.¹¹⁾

04 | 이종경합범 처리방법

-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11) 2011. 4. 15. 수정

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- 다만, 횡령 · 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횡령 · 배임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I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재범의 위험성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 ●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●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
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합의 ●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●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●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●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● 처벌불원
일반 참작 사유	재범의 위험성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반복적 범행 ● 비난 동기 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● 진지한 반성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본적 생계 · 치료비 등의 목적 이 있는 경우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지한 반성 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● 참작 동기 ● 피고인이 고령
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● 대량 피해자(근로자, 주주, 채권자 등을 포함)를 발생시킨 경우 ●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· 수수한 경우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● 상당 금액 공탁, 일부 피해 회복,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●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●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-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
 -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,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다만,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
 -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 - 다만,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·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¹²⁾

12) 2011. 4. 15. 수정